

# 南北會談 推進經過(II)

(南北赤十字會談)

1993. 10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 目 次

1. 南北赤十字 本會談 .....3
  
2.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관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61
  
3. 南北赤十字會談 再開 및 第2次 訪問團 交換을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71
  
4.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訪問을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93



# 1. 南北赤十字 本會談



## 南北赤十字本會談

- 0 第1次 本會談 (1972. 8.29 - 9. 2, 平壤)
- 0 第2次 本會談 (1972. 9.12 - 9.16, 서울)
- 0 第3次 本會談 (1972.10.23 - 10.26, 平壤)
- 0 第4次 本會談 (1972.11.22 - 11.24, 서울)
- 0 第5次 本會談 (1973. 3.20 - 3.23, 平壤)
- 0 第6次 本會談 (1973. 5. 8 - 5.11, 서울)
- 0 第7次 本會談 (1973. 7.10 - 7.13, 平壤)
- △ 第8次 本會談再開을 위한 豫備接觸  
(1984.11.2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8次 本會談 (1985. 5.27 - 5.30, 서울)
- 0 第9次 本會談 (1985. 8.26 - 8.29, 平壤)
- 0 第10次 本會談 (1985.12. 2 - 12. 5, 서울)

< 成立經緯 >

0 1971. 8.12 崔斗善 大韓赤十字社 總裁, 特別聲明

- 남북간의 家族찾기運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南北赤十字社 代表會談 개최 제의
- 本 會談의 절차문제 협의를 위해 늦어도 10월 안으로 『제네바』에서 豫備會談 개최 제의

0 1971. 8.14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便紙 (방송공개)

- 南北赤十字會談에서 가족찾기운동을 포함,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討議할 것을 제의
  - 남북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親友』들간의 자유로운 往來와 상호방문 실현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親友』들간의 자유로운 書信去來 실시 문제
  - 『가족』들을 찾아주고 相逢을 마련해 주는 문제
- 8.20 12:00 板門店에서 동 내용의 對南便紙 수교를 위한 派遣員 接觸 제의

0 1971. 8.20 南北赤十字 派遣員 接觸(제1차)

- 쌍방은 崔斗善 韓赤總裁의 『8.12 제의』문건과 北赤 손성필 위원장의 韓赤總裁앞 편지 수교

- 0 1971. 8. 26      南北赤十字 派遣員 接觸 (제2차)
- 崔斗善 韓赤總裁의 『남북적십자 豫備會談 절차에 관한 제의』를 담은 書翰을 北赤側에 전달
  - 제1차 豫備會談: 9. 28 板門店中監委 會議室, 쌍방 각기 代表 5명 참가
- 0 1971. 8. 30      南北赤十字 派遣員 接觸 (제3차)
- 北韓赤十字會, 제1차 豫備會談 개최일자 9. 20로 수정 제의
- 0 1971. 9. 3      南北赤十字 派遣員 接觸 (제4차)
- 大韓赤十字社, 北赤側의 수정제의 수락
- 0 1971. 9. 16      南北赤十字 派遣員 接觸(제5차)
-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참가 代表名單 상호교환
- 0 1971. 9. 20-  
1972. 8. 11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총 25회)
- 1971. 9. 29 제2차 豫備會談時 韓赤側이 본회담을 서울·平壤 운번개최 제의

- 1971.10. 6 제3차 예비회담시 北赤側이 韓赤側의 서울·平壤 운변개최 제의 수락
- 1972. 6.16 제20차 예비회담시 5個項目의 本會談 의제 채택·확정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相逢을 실현하는 문제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書信去來를 실시하는 문제
  - ④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문제
  - ⑤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문제
- 1972. 8.11 제25차 예비회담시 『本會談 기타 進行節次와 本會談 日時에 관한 合意』 채택·확정
  - 본회담 첫 회의 문제, 신변보장, 왕래절차,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회담장 외의 활동, 회담장 시설, 회의기록, 회의 공개여부, 보도진 문제, 회담 운영형식,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 편의제공, 회담을 위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수, 본회담 일시 등 18개 항목
- 1972. 8.13 本會談 북측 代表團 및 諮問委員 명단 발표
- 1972. 8.16 쌍방은 板門店에서 개최된 『通信實務者會議』에서 총 20회선의 남북직통전신·전화

회선을 架設키로 하는 내용의 『南北 電信 · 電話 架設 · 運用에 관한 通信技術者 實務會議 合意書』에 합의

- 1972. 8.17 南北直通 電話回線 가설
- 1972. 8.22 李厚洛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공동위원장  
과 北側 『사회안전성』이 각기 상대측 赤十字 本會談 대표단 일행의 신변안전보장 성명 발표
- 1972. 8.26 서울-平壤간 적십자 중앙기관간 直通電話 개통

《 第1次 本會談 : 1972. 8. 29 - 9. 2, 平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조연설을 통해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의 本會談 議題들을 재차 밝히면서, 本會談에 임하는 基本姿勢로서 쌍방 대표단이 赤十字人의 立場을 굳게 지켜야하고, 誠實과 忍耐로써 相互信賴· 이해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現實的· 段階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離散家族問題 解決에 첩경임을 지적</li> <li>○ 7.4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이 남북 적십자회담에서는 물론 장래 모든 경우에도 받아들여지고 遵守되어야 할 것임을 強調</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조연설을 통해 예비회담에서 확정된 議題들을 本會談의 議題로 한다는 것을 재차 表明하면서, 相互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 조성이 絶실히 요구됨을 강조하였고, 本會談에 임하는 쌍방 대표들의 성의있는 努力이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이 명시된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立場과 態度에서 표현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li> <li>○ 노동당, 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로청, 여성동맹, 조총련 등 8개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의 祝賀 演說과 그의 단체 및 인사들이 보낸 祝電 낭독으로 대부분의 會談時間을 消費</li> </ul>

## <合意事項>

### ○ 『제1차 南北赤十字會談 合意書』 採擇

1. 남북적십자회담 雙方代表團은 1972년 6월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20차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에서 採擇한 다음과 같은 南北赤十字會談 議題를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確認하고 이를 남북적십자회담 議題로 한다.
  -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 相逢을 實現하는 문제
  -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自由로운 書信去來를 實施하는 문제
  -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문제
  - 5)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문제
2. 쌍방은 自主, 平和統一, 民族的 大團結의 3대원칙이 천명된 南北共同聲明과 그리고 적십자 人道主義原則에 기초하여 남북 적십자회담 의제로 設定된 모든 문제들을 成果的으로 討議 解決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努力을 다한다.

《 第2次 本會談 : 1972. 9.12 - 9.16,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기조연설을 통해 會議의 보다 빠른 進展을 위해 향후 5가지 議題를 실질적으로 討議해 나가는데 있어서 適用되어야 할 基本原則으로서</p> <p>- 첫째, 사업대상인 離散家族과 親戚들의 『自由意思』의 保障이 반드시 尊重</p> <p>- 둘째, 쌍방 적십자사의 主管과 責任下에 『헌신적인 赤十字 奉仕精神』에 입각하여 적십자 사업 遂行</p> <p>- 셋째, 國際赤十字의 傳統的이고 普遍的인 사업방식을 기반으로 『迅速하고도 正確하게』 事業推進 등의 3개사항을 提示</p>	<p>○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原則的인 문제들에 대한 북측 대표단의 見解를 천명</p> <p>- 이산가족 당사자에게 條件과 制限이 가해지지 않는 자유로운 原則과 自由意思를 保障하는 민주주의 원칙 관철</p> <p>- 民族問題를 떠난 人道主義는 있을 수 없으며,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한 愛國愛族 精神</p> <p>- 남북공동성명은 自主的 平和統一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의 共同綱領이며, 쌍방 적십자 대표단의  염원을 집약한 共同的 基礎</p> <p>- 적십자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雙方代表들의 努力도 중요하지만 각계 각층 人民들의 거족적인 協調와 支援도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하므로 관계당국은 물론 各黨, 各派, 各界各層 人士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共同努力</p>

우 리 側	北 側
	- 조국을 統一하는 것이 최고의 人道主義이며, 최대의 愛國事業

<合意事項>

○ 『제2차 南北赤十字會談 合意書』 採擇

1. 쌍방은 온 겨레의 意思와 念願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議題로 設定된 모든 문제들의 解決에 있어서 民主主義的 원칙과 自由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精神과 同胞愛 그리고 적십자 人道主義 精神을 철저히 具現한다.
  
2.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부터는 議題에 대한 討議를 進行하며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1972년 10월 24일 平壤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進行하기로 한다.

《 第3次 本會談 : 1972.10.23 -10.26, 平壤 》

우 리 側	北 側
<p>○ 기조연설을 통해 먼저 議題의 實質討議에 앞서 의제 각 항목에 걸쳐 共通的으로 適用되어야 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基本立場을 다음과 같이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이 사업은 적십자의 人道性과 中立性의 원칙에 입각해서 赤十字 主管으로 추진</li> <li>- 둘째, 이 사업은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시종일관 當事者 本位(자유의사)로 추진</li> <li>- 셋째, 이 사업은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단절된 血緣的 紐帶를 回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혈육적 성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함.</li> <li>- 넷째, 의제를 토의하여 合意된 문제부터 지체없이 事業을 開始</li> </ul>	<p>○ 기조연설을 통해 人道主義 문제와 民族問題는 分離될 수 없는 통일 문제를 이루고 있고, 인도주의 문제는 祖國統一이란 민족문제가 해결됨으로써만 중국적으로 解決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5개항의 의제를 토의·해결하는데서 遵守해야 할 原則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회담사업에서 主體的 立場을 철저히 견지</li> <li>- 둘째, 제기된 모든 문제에서 民主主義原則과 自由로운 원칙을 철저히 관철</li> <li>- 셋째, 회담사업을 통해 相互理解와 信賴를 두터이 하고 민족적 和睦과 大團結을 도모하는 원칙 견지</li> <li>- 넷째, 적십자 人道主義 원칙을 철저히 구현</li> <li>- 다섯째, 이 사업을 거족적인 온</li> </ul>

우 리 側	北 側
<p>○ 議題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의 事業推進에 있어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이 一貫되어야 함을 強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쌍방 적십자사 주관하에 赤十字社가 모든 責任을 지고 사업완수</li> <li>- 둘째, 적십자 本質을 沮害할 염려가 있는 모든 要素는 일절 排除</li> <li>- 셋째, 당사자 각 개인의 自由意思의 절대 尊重</li> <li>- 넷째, 당사자 각 개인의 身上內容에 관한 秘密 保障</li> <li>- 다섯째, 이 사업의 推進을 위한 合意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 사업착수</li> <li>- 여섯째, 이 사업은 正確하고 訊</li> </ul>	<p>人民的 事業으로 推進시켜 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1항을 토의·해결하는데서 남북왕래와 연계를 원활히 실현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造成이 先次的이며, 질박한 실천적 문제로 된다고 강조하고 남북을 왕래하는 광범한 인원들에 法律的·社會的 制裁·統制를 가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民主主義를 保障하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li> <li>○ 이상에서 천명한 모든 문제를 요약, 議題 제1항에 관하여 4가지 方案을 제시</li> <li>-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赤十字 了解 解說委員』을 相互派遣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li> </ul>

우 리 側	北 側
<p>速하게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서 동 사업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見解를 제시</li> <li>- 첫째, 事業進行 節次에 관한 합의</li> <li>- 둘째, 照會用, 回報用 書式의 통일</li> <li>- 셋째, 사업진행에 필요한 機構 설치</li> <li>- 넷째, 事業開始 時期를 결정</li> <li>○ 이상과 같은 견해에 따라 의제 제1항을 妥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li> </ul>	

〈議題 第1項에 대한 雙方提案 比較〉

우 리 側	北 側
1. 事業의 節次	1. 남북의 現情況下에서는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노출로 인하

우 리 側	北 側
<p>가. 쌍방 적십자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로부터 住所와 生死를 알아낼 것을 원하는 依賴를 接受하면 소정의 依賴書를 작성하여 상대방에 수교한다.</p> <p>나. 쌍방 적십자는 의뢰서에 기재된 照會事項을 신속히 調査한 후 그 결과를 소정의 回報書를 작성하여 의뢰측 적십자에 수교한다.</p> <p>다. 쌍방 적십자는 상대측으로부터 받은 回報書 內容을 지체 없이 당초의 依賴人에게 알린다.</p> <p>2. 南北赤十字間에 使用될 書式의 制定</p> <p>남북적십자사가 상호간에 가족,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照會하고 그 조사결과를 回報하여 주는데 필요한 서식은 同一書式으로 하고 記載事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여 迫害를 받을 우려를 품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法律的, 社會的 障礙를 제거하며 當事者들과 協調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자유롭게 意思를 表示하고 활동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을 造成하도록 할 것.</p> <p>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事業을 원활히 保障하며 남북사이의 상호이해와 신뢰, 民族的 大團結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쌍방이 적당한 수의 赤十字 了解 解說委員을 각각 상대방 현지에 派遣할 것.</p> <p>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範圍는 本人의 呼訴에 따라 정하며, 그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는 본인의 民主主義的 要求와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따라 정하게 할 것.</p>

우 리 側	北 側
<p>첫째 :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는 依 賴書</p> <p>가. 對象人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li> <li>(2) 성별</li> <li>(3) 생년월일 또는 현재의 연령</li> <li>(4) 헤어진 시기(년 월 일)</li> <li>(5) 헤어질 당시의 직업</li> <li>(6) 헤어질 당시의 주소</li> <li>(7) 그를 찾는데 도움이 될 기 타사항 (사진포함)</li> <li>(8) 그에 관한 소식을 알려줄 만한 다른 사람의 성명 및 주소</li> </ol> <p>나. 依賴人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li> <li>(2) 성별</li> <li>(3) 생년월일 또는 현재의 연령</li> <li>(4) 주소</li> <li>(5) 대상인과의 관계</li> </ol> <p>둘째 :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回 報書</p>	<p>4. 이상 문제들에 대한 協議事項들 을 성과적으로 實現, 保障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 를 두며, 필요한 곳에는 赤十字 代表部를 설치할 것.</p>

우 리 側	北 側
<p>가. 對象人에 관한 사항</p> <p>(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또는 현재의 연령</p> <p>나. 確認事項</p> <p>※ 生者の 消息</p> <p>(1) 주소 (2) 가족상황 (3) 건강상태 (4) 직업</p> <p>※ 死者의 消息</p> <p>(5) 사망 년월일 (6) 사망 장소 (7) 사망 원인 (8) 墳墓 소재지 또는 奉靈場所 (9) 유족상황 (10) 기타사항(사진포함)</p> <p>다. 依頼人에 관한 사항</p> <p>(1) 성명 (2) 성별</p>	

우 리 側	北 側
<p>(3) 연령 (4) 대상인과의 관계 (5) 주소</p> <p>3. 事業機構 設置</p> <p>쌍방적십자는 가족,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文件交換 업무를 취급토록 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板門店 事業所를 設置한다. 그 설치·운영에 관한 細部的 事項은 따로 合意 決定한다.</p> <p>4. 事業의 開始 時期</p> <p>쌍방 적십자는 의제 제1항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文件을 交換하기 시작한다.</p>	

< 合意事項 >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때부터 南北으로 往來하는 記者數를 쌍방이 각기 5名씩 增員

《 第4次 本會談 : 1972.11.22 -11.24,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제3차 本會談時의 우리측 提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p> <p>- 첫째, 大韓赤十字社의 提案이 1천만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염원을 가장 迅速히 實現할 수 있는 방안</p> <p>- 둘째, 대한적십자사의 제안은 그 내용이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타당성을 가진 案</p> <p>- 셋째, 대한적십자사의 제안은 적십자 本然의 姿勢에 충실한 案</p> <p>○ 북측 제안은 적십자사업으로서의 純粹性을 벗어난 案일뿐 아니라 적십자 基本原則에도 違背된 내용임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p> <p>- 북측안 제1항, 즉 大韓民國에서 의 소위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環境 造成 요구는 명백히 적십자 본분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大韓民國의 법률적, 社會적 體制와</p>	<p>○ 4개항의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立場과 見解를 표명</p> <p>- 현실적으로 議題 제1항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民主主義 원칙과 자유로운 環境과 條件을 保障하는 것임.</p> <p>- 적십자는 관계당국에 건의, 인도주의에 저촉되는 法律的, 社會的 制 約을 除去하거나 필요한 법률과 질서를 制定토록 할 수 있음.</p> <p>- 親戚의 範圍를 어느 線 까지로 국한시키는 것은 統制와 制限을 가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대상 범위에는 남한에 가족, 친척을 둔 朝總聯 산하 在日朝鮮公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p>○ 議題 제1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사회적 장애 제거, 條件과 環境造成 문제에 대한 토의를 제의하였고, 또한 南北赤十字 共同委와 적십자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설치하고, 그 임무는 의제</p>

우 리 側	北 側
<p>制度는 대한민국의 國權을 守護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산가족 문제도 人道的이며 民族愛에 입각한 문제인 이상 하등 大韓民國의 秩序와 相馳되는 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항의 了解 解說人員의 파견 문제는 의제 제1항의 사업과 아무런 直接的 關係가 없으며, 重複된 절차로서, 상호신뢰의 기반 하에 추진하는 적십자회담의 基本姿勢에 違背됨.</li> <li>- 제3항 관련, 가족·친척의 범위는 客觀的 事實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며, 民族固有의 傳統과 慣習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秩序있게 進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呼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確認이 있어야 하며, 쌍방 적십자가 媒介體로 되어야 함.</li> <li>- 제4항 관련, 北側 提案說明 내용이 확실치 않으므로 계속 討議 필요</li> </ul>	<p>合意事項 履行을 보장, 구성은 따로 討議 決定하며, 이외의 필요한 機構는 따로 토의·결정한 다는 등 4가지 사항에 우선 合意를 볼 것을 제의</p>

< 合意事項 >

○ 『 제4차 南北赤十字會談 合意書 』 採擇

1. 남북적십자회담에서 合意되는 사항을 實行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共同委員會와 남북적십자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設置한다.
2.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機能과 運營節次 및 構成은 따로 토의 결정한다.
3. 남북적십자회담의 合意事項 實行을 위하여 그 밖의 機構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앞으로 토의 결정한다.

《 第5次 本會談 : 1973. 3.20 - 3.23, 平壤 》

우 리 側	北 側
<p>○ 다음과 같이 의제 1항에 관한 북측 見解에 대해 論駁하고, 우리측 立場을 표명</p> <p>- 북측의 소위 『법률적·사회적』 障礙 除去 주장은 ① 國際的으로 인정된 적십자의 權威와 權能에 대한 理解 부족, ② 不信과 誤解의 잠재 때문이며,</p> <p>우리측이 북측의 共產主義的 法律과 社會的 惡條件에 관해 굳이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① 적십자의 權能과 權威에 어긋나며, ② 7.4 남북공동성명의 精神을 존중하고, ③ 가장 크게는 남북 적십자사업은 相互信賴의 바탕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고,</p> <p>설사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어도 ① 北赤이 있고, ② 7.4 남북공동성명이 있고, ③ 赤十字 原則이 遵守되는 이상 걱정할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p>	<p>○ 의제 제1항에 관해 특히 法律的·社會的 조건환경 조성 문제를 集中 舉論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측 입장을 계속 고집</p> <p>- 자유로운 環境 및 條件造成은 이산가족, 친척들의 필연적인 요구로서 의제1항 해결의 근본적인 先決問題이며, 철두철미 적십자 내적사항으로서 人道主義事業 拋棄與否의 시금석이 될 것임.</p> <p>- 남북접촉과 개인의 自由意思 표시를 拘束하는 조건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산가족, 친척을 자유롭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며, 오히려 이산가족의 苦痛을 加重시키게 될 것임.</p> <p>- 우리의 주장은 남조선 體制内部를 논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離散家族의 苦痛을 실제적으로 덜어주자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임.</p> <p>- 가족과 친척의 범위는 전적으로</p>

우 리 側	北 側
<p>남북 적십자인들은 이미 南北을 往來한 경험을 쌓았고 쌍방 당국들도 적극 協調와 保障을 천명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척의 『範圍』를 本人 呼訴에만 의하고 상대방 確認이 불필요하다고 하나 상대방의 自由意思도 보장되어야 하며, 僑胞 문제는 在日同胞뿐 아니라 모든 해외교포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의제 제1항이 아니라 제5항 『기타 인도적인 문제』에서 토의해야 하고, 『찾는 방도』는 본인이 직접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 意思에 기본을 두고 赤十字가 도움을 주자는 것임.</li> <li>- 남북적십자회담은 祖國統一問題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離散家族, 親戚問題를 토의하는 자리이며 이것이 잘되면 조국통일 위업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임.</li> <li>- 적십자원칙에 입각해서 政治的 問題를 배제하고 적십자규약, 『제네바』 협약을 遵守, 충분히 연구·토의해 나가면 결과가 있을 것임.</li> </ul>	<p>本人의 呼訴에 따라 정해야 하며 전체재일동포들을 포함해야 하고, 相對方 確認 및 赤十字 介入 등은 不必要한 節次로 시간낭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당사자들이 직접 래왕하면서 찾는 것이 가장 쉽고 合理的이며, 不信과 誤解도 쉽게 가실 수 있고 민족단결과 통일위업도 촉진될 것이며, 남측의 의뢰서 교환방도는 本人意思를 정확히 反映할 수 없고 制限을 가하여 민족단결을 도모하는 데도 어긋남.</li> <li>- 남측은 『범위』에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나 그것은 적십자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만일 確認을 받아야 한다면 非人道的, 非民主的 結果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남측은 의뢰서 교환방법이 國際慣例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제관례가 우리나라 具體的 現實에는 맞지 않음.</li> </ul>

우 리 側	北 側
<p>○ 북측 제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難關을 가중시켰을 뿐이고 적십자 領域 밖의 事案임을 재천명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議題 제1항 해결에 관한 우리측 提案을 재설명</p> <p>① 이 사업은 적십자 쌍방의 주관과 책임아래 尋人依頼書와 回報書 교환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며, 적십자를 排除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또한 住所, 生死도 모르며 當事者가 찾아나서게 한다는 것은 赤十字事業 目的에 맞지않음.</p> <p>② 의뢰서와 회보서의 共同書式 使用을 제의했는데 이는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임.</p> <p>③ 共同機構 設置問題는 4차회담시 合意하였고, 파생문제 처리기능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要解 解說人員이 不必要할 것이며, 상대방 지역에서 宣傳活動을 하겠다는 것은 마찰을 유발할 뿐임.</p>	<p>○ 기조연설을 통해 『議題 제1항에 대한 北韓 赤十字會 代表團의 提案』을 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 提案內容 要旨 〉</p> <p>1. 法律的 社會的 條件 環境 造成</p> <p>가. 남북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處罰하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現行法規 撤廢</p> <p>나. 민족적 대립과 반목을 고취하는 모든 行動을 禁止하며, 緊張狀態를 완화함으로써 人道的 事業 원만히 保障</p> <p>다. 남북을 왕래하는 당사자 및 협조자·관계자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自由와 便宜保障, 인신과 휴대품 不可侵權 認定</p> <p>라. 정당, 사회단체, 공공기관, 개인들이 남북으로 흩어진</p>

우 리 側	北 側
<p>④ 議題 제1항 事業節次가 합의 되면 1개월내에 着手하자고 제의 했으나 북측은 한번도 이와 관련된 意思表示가 없음.</p> <p>⑤ 북측은 『범위』를 本人의 呼訴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신청자, 피신청자의 自由意思가 존중되어 가족, 친척 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재강조하며, 在日僑胞 문제는 제5항에서 討議 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남북적십자회담에서 合意되는 제사업과 그 사업의 推進, 이와 관련 派生되는 제사업 등은 여하한 기존의 法律的·社會的 저해를 받지 않을 뿐더러, 더우기 人道的 自由原則에 입각하여 적극 그 사업을 支援하는 것이 대한민국 政府의 方針인 이상 법률적·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p>	<p>겨레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事業에 協助할 수 있는 條件 보장</p> <p>2. 赤十字 了解 解說人員 相對側 地域 派遣</p> <p>가. 매개 里(洞)당 1명, 市·郡 (구역) 單位로 활동</p> <p>나.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實態了解 및 解說事業 進行</p> <p>다. 了解 解說人員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活動의 自由와 便宜保障, 인신과  휴대품 不可侵權 인정</p> <p>3. 흩어진 家族·親戚의 範圍</p> <p>가. 本人의 呼訴에 따름</p> <p>나. 전체 在日同胞 포함</p> <p>4. 住所, 生死 確認 方法</p>

우 리 側	北 側
<p>○ 諮問委員의 發言權 문제와  관련,  自문위원은  各자  소속된  代表團의  諮問에  應하는  것으로  족하며,  多數가   발언시  實質的인  討議의  進行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會談進展에  難關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음을  들어  북측  主張을  논박</p>	<p>가.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측지역을  自由往來</p> <p>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間接的,  補充的  方法들도   적용</p> <p>○  예비회담시  諮問委員의  發言問題  妥의를  보류시킨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自문위원의  인도적  민족적  事情과  現實的  要求에  비추어  會議發言權  認定을  要求</p>

《 第7次 本會談 : 1973. 7.10 - 7.13, 平壤 》

우 리 側	北 側
<p>○ 기조연설을 통해 議題 제1항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討議過程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p> <p>- 첫째, 모든 적십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人道主義 精神은 사상, 이념, 체제를 초월한 것으로 祖國統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적십자 인도주의는 통일 이전이라도 갈라진 血肉들을 찾아보겠다는 이산가족 친척들의 간절한 소망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先決課題이며, 다른 어떠한 선결조건도 있을 수 없음.</p> <p>- 둘째, 差異点보다 共通点을, 어려운 방법보다 쉬운 방법을 찾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會談을 進展시키는 올바른 자세임.</p> <p>○ 議題 제1항에 대한 우리측 대표단의 提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p>	<p>○ 기조연설을 통해 人道主義를 統一과 分離하는 것은 합의사항에 위배되며,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分裂을 막고 통일을 이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십자사업에 障礙가 되는 條件을 除去키 위한 『공동성명』 초안을 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聲明 草案 要旨〉</p> <p>쌍방은 사업에 障礙로 되는 法律的 및 社會的 條件을 제거하는 것이 先決課題라는 것을 인정하고,</p> <p>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現行 反共法規의 철폐</p> <p>② 모든 反共活動의 금지와 反共團體의 해체</p> <p>③ 사업 참가자에 대한 인신, 소지품의 不可侵 및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活動의 自由와 便宜保障</p>

우 리 측	北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가족·친척의 범위는 豫備會談에서 원칙적으로 合意된 사항으로 이미 解決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li> <li>- 둘째,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는 제3차 회담 이래 누차 설명한 바 있으며, 이는 國際的으로도 널리 活用되어온 전통적인 尋人事業 방법임.</li> <li>- 셋째, 서로 共同書式을 만들어 사용하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우리측이 기제시한 양식을 그대로 쓸수도 있고 쌍방 실무자간에 別途로 協議, 새로운 書式을 만들수 있음.</li> <li>- 넷째, 事業機構의 설치문제는 이미 제4차 회담에서 합의한 共同委員會와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조속히 發足시키고 사업성격상 다른 機構가 필요하면 쌍방 합의하에 새로이 設置할 수도 있음.</li> <li>○ 남북적십자간의 人道主義 事業을 보다 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南北赤十字會談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현 군사적 대치 및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積極的 措置 강구</li> <li>⑤ 쌍방은 당국으로 하여금 이상 조항들의 실현을 法的, 行政的으로 조치하고 이를 내외에 宣布토록 책임짐.</li> <li>○ 『省墓訪問團』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 환경조성이 先決된 후에 議題 順序에 따라 討議되어야 함</li> </ul>

우 리 側	北 側
<p>促進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提案』을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올해의 당면사업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로 『秋夕省墓 訪問團』을 구성하여 相互訪問토록 함.</li> <li>- 쌍방은 이 사업의 實現을 위한 諸般事項을 討議하기 위하여 대표 각 2명과 수행원 각 3명으로 實務者 會議를 구성하고 곧 協議를 개시함.</li> </ul> <p>○ 북측이 제기한 『共同聲明』문제는 赤十字事業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省墓問題 제안은 정체된 회담에 活力을 주고, 불신을 제거하여 信賴와 理解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의제 1항과는 無關함을 강조</p>	<p>을 강조</p> <p>* 省墓問題는 성격상 議題 5항에 속한다고 언급</p>

《 第8次 本會談 再開를 위한 南北赤十字 豫備接觸 : 1984.11.2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成立經緯 >

- 1984.10. 3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談話
  -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한 협의진행 용의 표명
  
- 1984.10. 4      劉彰順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書翰
  - 남북적십자회담 10월중 재개 촉구
  
- 1984.10.29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電通文
  -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 제의
  - 11.20 판문점 증감위회의실, 대표 3명
  
- 1984.11.14      劉彰順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
  - 예비접촉 참가 우리측 대표 명단 통보

우 리 側	北 側
<p>○ 대표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예비 접촉은 제8차 本會談의 再開를 위한 實務節次를 協議하기 위한 것이므로, 남북적십자 본회담 運營에 관해 쌍방이 이미 합의한 諸般事項들을 再確認하고 아울러 追加로 합의해야 할 문제에 관한 協議를 進行할 것을 거론</p>	<p>○ 다음과 같은 6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再確認하고 일부는 協議·調整할 必要性이 있음을 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본회담 場所문제</li> <li>- 둘째, 본회담 議題의 再確認문제</li> <li>- 셋째, 代表團 構成문제</li> <li>- 넷째, 기타 節次문제</li> <li>- 다섯째, 祝祭雰圍氣 속에서 제8, 9차 회담을 개최할 문제</li> <li>- 여섯째, 본회담 時日문제</li> </ul>

< 雙方 提案 比較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本會談 場所問題</p>	<p>○ 71.10.6 제3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合意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가며 開催함.</p> <p>○ 제8차 本會談은 順序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함.</p>	<p>○ 제8차 本會談은 서울에서, 제9차 本會談은 평양에서 개최함.</p>
<p>本會談 議題問題</p>	<p>○ 72.6.16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合意한 5個項으로 함.</p>	<p>○ 既合意된 5개항으로 함.</p>

區 分	우 리 側	北 側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기합의한대로 首席代表는 쌍방적십자사 副總裁級으로 하고 代表 각 7명, 諮問委員 각 7명, 隨行員 각 20명, 報道陣 각 25명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代表·諮問委員은 기합의대로하고 隨員은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記者는 25명에서 50명으로 늘임.</li> </ul>
常設連絡事務所 運營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9.29 제2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합의에 따라 그 機能을 正常化하고,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의 直通電話를 再開通運營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연락사무소 직통전화는 쌍방 合意로 즉시 運營再開함.</li> </ul>
本會談 其他 運營 節次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변보장, 왕래절차, 체류기간, 회담일정, 標識,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회담장외의 활동, 회담장 시설, 회담기록, 회담공개 여부, 보도진, 회담운영 형식,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 편의제공에 관한 문제는 72.8.11 제25차 남북 적십자 豫備會談의 合意事項과 72.10.25 제3차 本會談時의 報道陣 數에 관한 追加 合意事項대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8.11 제25차 예비회담시 合意한대로 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항의 身邊安全保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 인원의 身邊과 活動 便宜,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關係當局聲明을 회담 1주일전에 發表하고 聲明文本을 交換함.</li> <li>- 12항의 會議形式은 非公開를 원칙으로 함.</li> </ul> </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8.9차 본회담은 議 題를 討議하되 公開로 함.</li> </ul>
會談祝祭 雰圍氣및 祝賀公演 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9차 본회담을 祝祭 雰圍氣로 함.</li> <li>- 제8차 본회담시에는 北側 藝術人이 서울에 서 祝賀公演을, 제9차 본회담시에는 南側 藝術人이 평양에서 祝賀 公演을 함.</li> </ul>
8次 本會談 開催日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접촉이 終結된 날로 부터 1個月以内인 12.18-12.21까지 3박4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본회담의 시일은 南側에서 會談을 개최 하기 때문에 南側의 裁 量에 맡김.</li> <li>○ 85.1.23경으로 했으면 함.</li> </ul>

< 合意事項 >

- 제8차 本會談은 서울에서, 제9차 本會談은 平壤에서 開催

- 本會談 議題는 쌍방이 既合意한 5個項
- 本회담 代表團은 각기 84명으로 구성
  -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기자 50명
- 板門店 常設連絡事務所의 機能 및 直通電話를 즉시 再開
- 8,9차 本회담은 公開, 그후 회담부터는 非公開를 원칙으로 하되 雙方 合意에 따라 公開 可能
- 本회담의 기타 運營節次問題

< 豫備接觸 以後 雙方 主要動向 >

- 1984. 11. 22            豫備接觸 大韓赤十字社 首席代表, 對北電通文
  - 제8차 本회담 85.1.23 개최 제의
- 1984. 12. 14            豫備接觸 北韓赤十字會 團長, 對南電通文
  - 제8차 本회담 85.1.23 개최 동의
- 1985. 1. 4            韓·美 聯合司 代辯人, 記者會見
  - T/S '85 훈련 계획 발표, 동 훈련에 북한측 參觀을 초청

- 1985. 1. 9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對南電通文
  - T/S '85 훈련이 중지될때까지 제8차 본회담 연기 통보
  
- 1985. 3.25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
  - 제8차 본회담 85.5.15 개최 제의
  
- 1985. 4. 4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對南電通文
  - 제8차 본회담 개최일자 85.5.28로 수정제의
  
- 1985. 4. 4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
  - 북측의 본회담 개최일자 수정제의 수락

《 第8次 本會談 : 1985. 5.27 - 5.30,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議題討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議題 5個項 각각에 대한 具體的 實踐方案을 제시</p> <p>- 議題 제1항 : 國際赤十字의 이산가족찾기 사업의 慣例에 따라 쌍방 적십자가 이산가족찾기 依頼書와 回報書를 주고 받음으로써 이산가족들의 生死와 住所를 알아내고 알려주는 사업방식이 가장 바람직</p> <p>- 議題 제2항 :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自由意思를 최대한 尊重하여 방문과 상봉의 기간, 장소, 횟수 등을 정하면 될 것임. (訪問의 경우 대규모 團體訪問團을 相互交換, 적당수의 報道人員들이 수행하여 取材活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相逢의 경우 판문점에 面會所를 설치 또는 本人들이 원하는 편리한 場所에서 상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p> <p>- 議題 제3항 : 書信去來는 편지,</p>	<p>○ 先決的이고 中核的인 문제로 되는 이산가족·친척들의 自由往來를 實現하는 문제를 討議·解決할 것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具體的인 提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p> <p>- 첫째, 議題討議를 促進하기 위하여 1항부터 5항까지를 一括討議</p> <p>① 일괄토의에서는 5가지 의제들에 共通的으로 관계되고 이산가족·친척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데 가장 선결적·중핵적인 문제로 되는 方途를 優先 討議</p> <p>② 이산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밖의 문제들도 가급적 빨리 토의</p> <p>- 둘째, 5가지 議題에 共通的으로 관계되고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先決的·中核的인 方途는 자유래왕으로 함.</p>

우 리 側	北 側
<p>엽서 등 本人이 便利한대로 하며 전화, 전보 등의 通信手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임. (통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 배달업무는 신속히 처리)</p> <p>* 제4차 본회담시 합의한 바 있는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에서 南北郵便物 交換 業務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p> <p>- 議題 제4항 :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본인의 自由意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家族들과 再結合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p> <p>- 議題 제5항 : 의제 제1항에서부터 제4항 까지에 包含되지 않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人道的 事業들을 雙方이 協議해서 포함</p> <p>* 유품·유골의 송환, 분묘의 이장 등</p> <p>o 5개항 議題의 實踐方案을 조속히 협의·해결할 것과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제4차 회담에서 事業實行機構로 합의한 바 있는</p>	<p>(1) 自由來往 節次</p> <p>① 래왕자는 자기측 적십자단체 발행의 신임장 지참</p> <p>② 해당 적십자단체는 출발 1개월 전 자유래왕 대상자와 행선지를 상대측 적십자 단체에 통지</p> <p>③ 래왕자의 행선지는 헤어질 당시 가족·친척이 살던 곳으로 하며 필요시 상대측 적십자 단체의 협조하에 변경 가능</p> <p>④ 래왕자의 체류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p> <p>⑤ 래왕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지점은 판문점과 철원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늘릴 수 있음.</p> <p>(2) 來往者 範圍</p> <p>① 가족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 자녀</p> <p>② 친척은 방계에서 8촌, 처·외가는 4촌까지</p> <p>③ 그밖에 당사자 요구 친척도 포함</p> <p>(3) 便宜 및 安全保障</p>

우 리 측	北 측
<p>『南北赤十字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발족, 이산가족찾기 사업에着手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p> <p>○ 5개항 의제의 실천방안이 모두 合意되기 이전이라도 이산가족찾기 事業을 促進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금년 8.15를 기하여 정규모의 제1차 『離散家族故鄉訪問團』을 構成하여 相互交換할 것을 제의</p> <p>- 제1일회의에서의 북한측의 藝術團 交換 提議를 수용하여 제2일회의에서는 금년 8.15를 기하여 離散家族故鄉訪問團 교환과 함께 예술단을 교환 방문하도록 하며 (기자 수행), 그 具體的 節次 協議를 위한 쌍방 실무접촉을 7.15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p> <p>○ 제2일회의에서는 북측이 제기한 『自由往來』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은 우리측의 立場과 見解를 표명</p> <p>- 북측이 제기한 自由往來問題는</p>	<p>① 북남적십자 판문점 및 철원 공동사업소와 북남적십자 공동위원회 설치</p> <p>② 숙식, 교통, 통신 등 편의는 상대측 적십자 단체가 책임지고 보장</p> <p>③ 긴급구제와 의료상 방조 필요시 상대측 적십자단체가 무상봉사</p> <p>④ 안전보장은 적십자 단체들의 중개하에 쌍방 당국이 대책 수립</p> <p>⑤ 구체적 토의는 별도로 함.</p> <p>○ 남북적십자회담의 霧圍氣를 造成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한 對策으로서 해방 40돐을 맞이하는 8월을 기해 雙方 赤十字團體 委員長(總裁)들이 각기 赤十字 會員들로 구성된 100명 정도의 藝術團을 대동하고 相互 訪問하여 傳統的인 民俗歌舞를 기본으로 하는 祝賀公演을 가질 것을 제의</p> <p>- 제2일회의에서 우리측이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相互交換 訪問實施를 제의한 데 대해 이를 수락</p> <p>○ 제2일회의의 첫발언을 통해 북측의</p>

우 리 側	北 側
<p>議題 제2항으로 쌍방이 이미 승 의한 사항이며, 기합의한 문제 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자유왕래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가장 先決的이고 中核 的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 는 것은 과거 제3차 본회담에서 이른바 法律的 條件과 社會的 環境의 改善이 의제토의의 先決 問題라고 한 북측의 주장을 다시 연상시켜주고 있음.</li> <li>- 과거와 같은 政治的 前提條件을 제기하거나 우리측의 内部問題 를 是非하기 위해 자유왕래를 또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合意할 수 있음.</li> </ul>	<p>새로운 제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남북이산가족들의 意思와 念願을 가장 충분히 반영</li> <li>- 둘째, 우리나라의 具體的 現實을 가장 정확히 반영</li> <li>- 셋째, 쌍방이 기합의한 民主主義 原則과 自由로운 原則, 적십자 人道主義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 고 있을 뿐 아니라 7.4共同聲明 의 정신을 구현할 데 대한 合意 사항에도 전적으로 부합</li> <li>- 넷째, 國際赤十字의 원칙에도 전 적으로 부합</li> <li>- 다섯째, 지난 시기 남측의 意思 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li> </ul> <p>5가지 의제에 공통적으로 관계되고 이산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 는 데서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인 방도는 『自由來往』임을 내세 워 이 문제에 대해서만 合意할 것 을 되풀이 주장</p>

< 合意事項 >

-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과 細部節次 討議를  
위한 實務代表接觸 開催
- 議題 5개항 一括討議 및 自由往來 實施 문제
- 제9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1985. 8. 27 平壤에서 開催

《 第9次 本會談 : 1985. 8.26 - 8.29, 平壤 》

\* 쌍방 首席代表의 基調演說에 앞서 세차례의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통해 1985.8.22 합의한 바 있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交換 訪問에 관한 合意書 文案을 쌍방 회담 대변인이 각기 朗讀하고 쌍방 수석대표가 이를 確認

우 리 側	北 側
<p>○ 기조연설을 통해 5개항 의제에 따른 事業 實踐方案에 대한 구체적인 合意를 생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綜合的인 方案으로 다음과 같이 3개 合意書(案)을 제시</p> <p>&lt; 南北赤十字 本會談 議題 5個項의 事業實施에 관한 合意書(案) &gt;</p> <p>첫째, 쌍방은 쌍방 赤十字의 主管과 協調하에 의제 5개항 사업들을 다음과 같은 方法과 節次에 따라 실시</p> <p>1. 이산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은 當事者들의 自由意思에 따라 이</p>	<p>○ 기조연설을 통해 『제8차 본회담에서 5개항 의제를 一括討議하여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包括的인 方途로서 自由往來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에 합의』하였다고 主張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合意書를 採擇할 것을 제의</p> <p>&lt; 北韓 赤十字會 代表團의 提案 &gt;</p> <p>첫째, 남북적십자회담 議題를 一括 討議</p> <p>둘째, 의제실현에서 중핵적이며 包括的인 方途를 자유래왕으로 하며 자유래왕을 통하여 이산가족·친척들의 意思와 念願에 맞게 사업추진</p>

우 리 側	北 側
<p>산가족 찾기 依賴書와 回報書를 주고 받음으로써 실시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自由롭게 往來하는 과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竝行 實施</p> <p>2. 이산가족·친척들의 訪問과 相逢을 실현하는 사업은 자유로운 往來를 통해 실시</p> <p>상봉의 경우 當事者 希望에 따라 판문점이나 기타 장소에 面會所 設置, 상봉</p> <p>판문점 면회소의 設置 및 運營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p> <p>3. 이산가족·친척들사이의 書信 去來는 봉함편지, 엽서 등 당사자들이 便利한 대로 하며 전화·전보 등의 通信手段도 이용</p> <p>남북의 서신거래 업무는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p> <p>4. 이산가족들의 再結合은 當事者</p>	<p>① 이산가족·친척들은 自己意思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직접 가족·친척들의 住所와 生死 確認</p> <p>② 이산가족·친척들은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親戚을 訪問하고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가족·친척들과 相逢</p> <p>③ 이산가족들은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再結合하는 문제를 協議·實現</p> <p>④ 이산가족·친척들은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지역에 가서 省墓, 遺品 處理, 遺骨 移轉</p> <p>셋째, 자유래왕 이외에 제기되는 其他 方途들도 이산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도로 함.</p> <p>넷째, 의제의 每 項의 실현과 관련되는 기타 방도들은 자유래왕 문제에 대한 合意書를 採擇한 다음에 토의 확정</p> <p>다섯째, 의제의 具體的인 實現과 관련된 節次問題는 자유</p>

우 리 側	北 側
<p>들의 자유로운 選擇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줌.</p> <p>再結合을 實踐하기 위한 實務的 사항은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서 協議·決定</p> <p>5.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사업은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협의·결정</p> <p>둘째, 이상의 事業을 實施함에 있어서 필요한 당사자들의 自由往來 절차는 별도로 정함.</p> <p>셋째,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의 合意事項의 履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차 본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早速히 發足</p> <p>『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별도로 정함.</p>	<p>래왕 방도와 그밖에 제기 되는 기타 방도를 합의한 다음에 함께 토의</p> <p>여섯째, 이산가족·친척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方途와 節次問題 토의는 1986년 9월 전으로 끝냄.</p>

우 리 側	北 側
<p>넷째, 이산가족·친척들을 위한 赤十字事業을 원활히 推進하고, 쌍방 적십자간의 긴밀한 協調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자기측 인원에 대한 協助와 連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각각 赤十字 代表部를 設置·運營</p> <p>다섯째, 본 합의서는 쌍방이 署名하여 交換한 때로부터 效力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有效</p> <p>&lt;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 및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gt;</p> <p>1. 設置目的</p> <p>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諸般事業을 成果的으로 履行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공동 위원회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를 設置·運營</p>	

우 리 側	北 側
<p>2. 共同委員會</p> <p>가. 機能</p> <p>(1)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의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發生하는 諸般問題를 調整·解決</p> <p>(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再會事業과 관련하여 새로이 提起되는 모든 人道的 問題 협의·해결</p> <p>나. 構成</p> <p>쌍방에서 각각 5명의 委員으로 구성, 共同委員長은 副總裁(부위원장)級으로 함.</p> <p>다. 運營</p> <p>(1) 회의는 板門店에서 開催하는 것을 원칙, 雙方 合意에 따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 가능</p> <p>(2) 매 3개월마다 定期會議, 어느 一方이 要請하면 臨時會</p>	

우 리 側	北 側
<p>議 개최 가능</p> <p>(3) 회의는 非公開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공개 가능</p> <p>(4) 합의사항은 共同事業所에 委任하여 實行</p> <p>3. 共同事業所</p> <p>가. 機能</p> <p>(1) 이산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기 위한 이산가족찾기 依賴書와 回報書 交換 業務 수행</p> <p>(2) 이산가족·친척들 사이의 書信去來 業務 수행</p> <p>(3) 판문점에서 相逢하기를 희망하는 이산가족·친척들을 위하여 판문점내에서의 面會 業務 수행</p> <p>(4) 이산가족·친척들의 板門店 通過와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p> <p>(5)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一般事務를 담당하며,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委任되는 人道主義 事業을 수행</p>	

우 리 側	北 側
<p>나. 構成</p> <p>쌍방에서 각기 赤十字 中央機關의 部長級 所長 1명과 필요한 事務人員으로 구성, 공동 사업소의 部署와 그 사무인원의 수는 별도로 협의·결정</p> <p>다. 運營</p> <p>(1) 쌍방은 판문점에 共同事業所 建物を 共同으로 新築하여 사용, 단 건물 완성시까지 잠정적으로 『평화의 집』, 『판문각』에 각기 공동사업소를 設置·運營</p> <p>(2) 쌍방 공동사업소의 소장은 매주 1회씩 定期的으로 非公開會議,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隨時 會議 開催 가능</p> <p>(3) 쌍방은 본 합의서 署名·交換後 1개월이내 공동사업소를 동시 설치·운영</p> <p>(4) 공동사업소의 建築問題와 공동사업소에 관한 運營細則은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p>	

우 리 側	北 側
<p>4.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교환한 때로부터 效力을 발생하며 相互 合意에 의해 廢棄하지 않는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p> <p>&lt;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自由往來 節次에 관한 合意書(案) &gt;</p> <p>1. 남북왕래 家族의 範圍는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후 출생한 子女로 하며, 親戚의 범위는 방계에서 8촌, 처가 및 외가로는 4촌으로 함.</p> <p>2. 남북왕래 가족·친척의 往來 目的은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生死와 住所確認, 訪問 및 相逢 등으로 하며, 기타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왕래를 희망할 경우에는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p> <p>3. 남북왕래 가족·친척은 자기측 적십자가 발급한 南北往來 證明書를 지참, 동 증명서에는 왕래의 目的, 行先地, 滞在期間 및 기타 필요사항 기재</p> <p>4. 남북왕래 가족·친척에 대하여 해당 적십자는 出發 1개월 전에</p>	

우 리 側	北 側
<p>往來者들과 그들의 行先地를 상대측 적십자에 통지</p> <p>5. 남북 왕래 가족·친척의 행선지는 그들의 故鄉 또는 헤어질 당시 그들이 살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적십자의 協助에 變更 가능</p> <p>6. 남북왕래 가족·친척의 상대측 지역 滯留期間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적십자의 協助下에 延長 가능</p> <p>7. 남북왕래 가족·친척의 軍事分界線 通過地點은 판문점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더 늘릴 수 있음.</p> <p>8. 남북왕래 가족·친척에 대한 宿食, 交通, 通信 등 제반편의는 상대측 적십자가 責任지고 보장</p> <p>9. 남북왕래 가족·친척에게 緊急 救濟와 의료상 保護措置 필요시 상대측 적십자가 無償 奉仕</p> <p>10. 남북왕래 가족·친척에 대한 安全保障 문제는 왕래자 전원이 無事歸還할 수 있도록 쌍방 적십자의 중개하에 쌍방 當局이 책임지고 보장</p>	

우 리 側	北 側
<p>11. 본 합의서는 쌍방이 署名·交換한 때로부터 效力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廢棄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p> <p>○ 한편 제2일회의에서 『모란봉 경기장』 退場事件과 관련, 이는 刺戟的인 政治的 行事を 앞장서는 약속을 무시하고, 參觀場所 임의변동과 種目에 대한 事前 通報를 앞둔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體制對立에 따른 동 사건에 대한 是非를 止揚하고 본질문제를 토의할 것을 촉구</p>	<p>○ 한편 제2일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날 會議를 非公開로 진행하기로 한 제1일회의 合意를 무시한 채 공개리에 『모란봉 경기장』 事件을 시종일관 集中舉論·是非하면서 우리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強壓的인 분위기를 造成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우리측의 實質問題 討議 促求에 끝내 불응</p> <p>* 이산가족고향방문·예술공연단 交換訪問 事業 再考 意思 표명</p>

〈雙方主張 比較〉

우 리 側	北 側
<p>○ 綜合的인 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3개 合意書(案)을 제시하고 一括 討議, 一括解決 주장</p>	<p>○ 자유왕래 문제에 대한 合意書를 우선 採擇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3段階 解決方式 제시</p>

우 리 側	北 側
<p>(1) 議題 5個項 事業 實施에 관한 基本合意書</p> <p>(2) 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판문점 공동사업소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p> <p>(3) 自由往來 節次에 관한 合意書</p>	<p>(1) 제1단계 : 『自由往來問題』에 대한 合意書 채택</p> <p>(2) 제2단계 : 자유왕래 이외의 其他方途 討議·解決 (의뢰서 및 회보서 교환방식, 서신거래 문제등)</p> <p>(3) 제3단계 : 議題의 具體的 實現과 관련된 節次問題 (공동위원회, 공동사업소 구성 운영방안 등)</p>

《 第10次 本會談 : 1985. 12. 2 - 12. 5, 서울 》

우 리 側	北 側
<p>○ 기조연설을 통해 제9차 본회담에서 提示한 바 있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 본회담 議題 5개항의 事業實施에 관한 合意書(案)』</li> <li>-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自由往來 節次에 관한 合意書(案)』</li> <li>-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등 종합적인 3개 합의서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一括討議,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적십자회담을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事業實踐 段階에 들어갈 것을 촉구</li> </ul> <p>○ 제9차회담에서의 쌍방 제안에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自由意思를 최대한 尊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의제 5개항을 조속히 토의, 그 成果를 合意書로 채택하자는 점 등 공통점이 있는 반면 議題</p>	<p>○ 기조연설을 통해 제8, 9차 본회담에서 제시했던 自由往來에 관한 제안을 一部 補完하여 『合意書』形式으로 제시하고 이를 우선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이산가족·친척 가운데서 年齡上, 身體上, 기타 사정으로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對象들에 한해 적용할 『合意書』가 아닌 『提案』形式의 이른바 『자유왕래 이외의 其他 方途에 대한 提案』을 別途로 제시</p> <p>〈 北과 南으로 갈라진 家族, 親戚들의 自由往來에 관한 合意書(案) 〉</p> <p>1. 自由往來 原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사자인 이산가족·친척들의 人格 최대한 尊重</li> <li>② 왕래자의 人道的 活動을 장애하는 일체의 干涉·統制를 금함.</li> <li>③ 왕래자의 身邊을 拘束하는 일을 금지</li> </ul>

우 리 측	北 측
<p>討議 방식과 合意書 內容에는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마땅히 5개항 議題의 항목별 實踐方案을 다함께 제시하고 이를 綜合的으로 토의·해결해야 할 것이고</li> <li>- 둘째, 우리측이 具體的 內容을 담은 綜合的인 합의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北側의 提案에는  종합적인 內容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측이 이에 상응하는 綜合的인 합의서안을 提示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측 합의서안을 토대로 一括討議를 進行할 것을 북측에 촉구</li> <li>○ 또한 1986년 구정을 기해 離散 家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재추진 할 것과, 1차 고향방문단 교환시 상봉 이산가족들간의 相互 書信交換을 周旋 할 것을 아울러 제의</li> </ul>	<p>2. 自由往來 範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족은 흩어질 당시의 家族과 出生 子女</li> <li>② 親戚은 방계에서 8촌, 처·외가는 4촌까지</li> <li>③ 그 밖에 當事者들이 要求하는 친척도 포함.</li> </ul> <p>3. 自由往來 節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왕래가족·친척들은 自己側 赤十字 團體에 신청</li> <li>② 신청받은 적십자 단체는 出發 1개월 전 對象者와 行先地를 상대측 적십자 단체에 통지</li> <li>③ 왕래자의 행선지는 그들의 故鄉과 헤어질 당시 가족·친척들이 살던 곳, 가족·친척들의 職場所在地, 상봉할 곳 등</li> <li>④ 왕래자의 滯留期間은 1개월 정도로 함.</li> </ul> <p>4. 往來者들의 往來手段과 通過地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交通手段은 희망에 따라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로 함.</li> </ul>

우 리 側	北 側
	<p>② 通過地點은 陸路는 판문점과 철원, 海上으로는 원산항과 부산항, 남포항과 인천항, 航路로는 순안비행장과 김포비행장으로함.</p> <p>5. 往來者의 便宜保障</p> <p>① 숙식, 교통, 통신 등 便宜는 상대측 적십자단체가 보장</p> <p>② 긴급구제, 의료상 방조 필요시는 상대측 적십자단체가 無償奉仕</p> <p>③ 구체적 문제는 별도 토의</p> <p>6. 往來者의 身邊安全保障</p> <p>① 신변안전보장은 적십자 단체의 중개하에 雙方當局이 對策樹立</p> <p>②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한 구체적 토의는 별도로 함.</p> <p>&lt; 自由往來 이외의 其他 方途들에 대한 提案 &gt;</p> <p>1. 自由往來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p>

우 리 側	北 側
	<p>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은 自己側 赤十字團體에 의뢰</p> <p>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은 자기가 信賴하는 代理人을 상대측 지역에 보내 주소와 생사 확인</p> <p>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은 상대측 團體·個別人士들에게 依賴하여 주소와 생사 확인</p> <p>2. 自由往來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相逢 實現 方途</p> <p>① 相逢은 관문점과 철원, 그밖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소</p> <p>② 相逢 便宜를 위해 관문점, 철원 그밖의 상봉 장소에 共同事業所 설치</p> <p>3. 自由往來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書信去來 實現 方途</p> <p>① 편지, 엽서 등 郵便物 交換</p> <p>② 전화, 전보 등 通信手段 利用</p> <p>③ 우편물 교환절차, 전화, 전보 절차는 별도 토의</p> <p>4. 自由往來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再結合 實現 方途</p>

우 리 側	北 側
<p>○ 제2일회의 첫 발언을 통해 재1일 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3개 종합적인 合意書 초안의 正當性 과 合理性을 재강조하고, 북측 제안내용의 不合理性을 다음과</p>	<p>① 당사자들의 便紙去來 통해 재 결합 실현          ② 당사자들은 자기의 親戚과 신뢰 하는 仲介者를 내세워 재결합 실현          ③ 당사자들은 雙方 赤十字團體에 의뢰, 재결합 실현</p> <p>5.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의 실현 방도</p> <p>① 당사자들은 신뢰하는 代理人을 통해 遺品 處理 및 遺骨 移轉          ② 당사자들은 쌍방 赤十字 團體에 의뢰, 유품처리 및 유골 이전          ③ 親友消息을 알아내고 알리며,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訪問과 相逢, 書信去來의 실현 방법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경우와 같이 함.          ④ 이외 쌍방 합의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더 討論할 수 있음.</p> <p>○ 제2일회의 첫발언에서 북측은 『自由往來에 관한 合意書案』 및 『자유왕래 이외의 其他 方途들에 대한 提案』의 正當性과 合理性만을 강조하고, 우리측 기</p>

우 리 側	北 側
<p>같이 體系的으로 논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由往來를 主로하고 의제 5개항을 이에 從屬시킨 것은 적십자 사업의 本末을 顛倒시키는 것</li> <li>- 자유왕래자와 비자유왕래자를 구별한 事業推進方途는 당사자들의 自由意思 尊重 원칙에 위배</li> <li>- 자유왕래자에게만 書信去來를 認定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li> </ul> <p>○ 아울러 제8차 본회담에서 합의한 議題의 一括討議 원칙을 준수하고 의제 5개항 사업을 조속히 妥結하기 위해 북측에서도 자유왕래 문제뿐 아니라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판문점공동 사업소』의 구성·운영 문제를 포함하는 綜合的인 合意書案을 提示할 것을 재촉구</p>	<p>본합의서에서 자유왕래 문제를 議題 1, 2항에만 局限시키고 議題 4,5항을 共同委員會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자유왕래 원칙을 違反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왕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측이 제의한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流問題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측이 1986년 舊正을 기해 제2의 故鄉訪問團을 交換할 것과 1985년 9월에 상봉한 이산가족들간의 書信交換을 促求한 제의에 대해서도 모두 拒否</p>

〈 主要 爭點別 雙方 主張 比較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一括討議方式 問題	의제5개항을 綜合的으로 解決 (일괄제의→일괄토의→일괄 타결)	의제5개항 해결의 중핵적 이고 包括的인 方途로서 自由往來 문제 優先 解決
自由往來解釋 問題	의제5개항 事業解決을 위한 여러가지 方法중 하나로 간주	의제5개항을 包括 解決하는 基本方途
合意書 採擇 問題	綜合的인 합의서 一括採擇	段階的 합의서 採擇 (자유왕래→기타방도→ 절차문제)
故鄉訪問團 交換問題	내년 舊正을 기해 거듭 실시	拒 否 (자유왕래가 실현되면 자 연히 해결)
1次故鄉訪問團 相逢者 書信 交換 問題	書信交換問題 협의를 위한 實務會議 개최	拒 否
代表團 서울- 平壤 飛行機 利用 問題	不 必要 (관례대로 육로 이용)	11차 회담부터 실시 위한 實務會議 개최
赤十字 事業 對象에 『親 友』를 包含 시키는 問題	反 對 (의제밖의 문제)	議題 제5항 事業對象에 포함 (가족·친척들과 같은 방 식으로 실시)



## 2.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 관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與 藝術公演團 交換關聯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0 第1次 實務代表接觸 (1985. 7.1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2次 實務代表接觸 (1985. 7.1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3次 實務代表接觸 (1985. 8.2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成立經緯 >

- 1985. 5.29 第8次 南北赤十字 本會談(1985.5.27-5.30, 서울)時  
『離散家族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과 細部  
節次 討議를 위한 實務代表接觸 7.15 開催 合意

《 第1次 實務代表接觸 : 1985.7.1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측	北 측
<p>○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과 有關한 大韓赤十字社側(案) 提示</p> <p>- 基本問題 關聯事項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시기, 방문지 및 방문방법, 상봉 범위,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공연내용, 공연시간 등</p> <p>- 行政 및 節次問題 關聯事項 신변안전보장, 수송 및 통신, 기자의 취재활동,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방문자 명단 통보시기, 방문자 명단 작성양식, 방문자의 표지, 소지품, 체류일정, 숙소등</p>	<p>○ 『赤十字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相互訪問과 有關한 意見 提示</p> <p>- 訪問團의 名稱과 構成, 滯留期間, 교환시기 및 方法문제</p> <p>- 藝術團 交換문제</p> <p>- 故鄉訪問團 문제</p> <p>- 便宜 및 安全保障問題</p> <p>○ 訪問團 規模에 있어 호상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人員을 同數로 할 것을 계속 主張하고 또한 다같이 수를 줄이는 것도 檢討할 것을 提議하였으며, 公演內容을 實況 中繼하여 많은 사람이 視聽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主張하는 한편 우리측이 藝術公演問題에 制限과 統制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p>

< 雙方提案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名 稱	○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 赤十字 藝術團 및 故鄉 訪問團
訪問方法	○ 同時交換訪問	○ 서로 엇바꾸어 방문
訪問人員	○ 총인원 : 550-560명 - 故鄉訪問 : 300명 - 藝術公演團 : 100명 - 取材記者 : 100명 - 引率·支援人員 : 50-60명	○ 총인원 : 700명 - 故鄉訪問團 : 300명 - 藝術團 : 300명 - 記者 : 50명 - 實務일꾼 : 50명
訪問地 및 訪問方法	○ 訪問地別(특별시·직할시·각도)로 訪問團을 編成하고 각 訪問團을 적정수의 방문조로 나누어 자기 고향을 직접 방문	○ 平壤 및 서울에서 家族相逢
滯留期間	○ 9월20일-26일(6박 7일간) ○ 藝術公演 準備에는 事前 準備 期間이 必要	○ 9월5일 - 9월 15일 사이 ○ 期間은 訪問地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짐. 서울·平壤으로 하면 6박 7일을 할 필요 없음.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公演場所	○ 相互 便利한 場所 提供	○ 호상성의 원칙에 의함.
公演回數	○ 1일 1회, 총 2-3회	○ 체류기간을 고려, 3-4회
公演內容	○ 特定人 讚揚, 政治宣傳 등 政治的 要素 排除, 民族 傳統 中心 內容	○ 각기 便利한 內容으로 함.
公演內容 紹介 · 中繼	○ 공연프로그램을 公演하는 측이 製作 · 携帶하여 配布 ○ 公演內容 實況中繼는 雙方의 便宜에 따라 함.	○ 라디오, TV로 實況中繼 함. ○ 公演紹介 포스터를 附着
公演時間	○ 120분 정도	○ 2시간 정도
公演場點檢	○ 演出家, 舞臺 및 音響技術者 등 公演技術 人員이 公演場을 事前踏査함.	○ 출발 2주일전 赤十字 일꾼 2명 案内下에 3명의 專門人員을 2박 3일간 相對側에 派遣, 公演場所를 了解함.
身邊安全保障	○ 訪問 8일전에 身邊安全保障 聲明 發表 및 訪問 3일전에 文件 전달	○ 雙方 意見接近
輸 送	○ 서울-平壤間 輸送은 訪問側이 자기側 車輛을 利用	○ 慣例대로 招請側에서 擔當

區 分	우 리 側	北 側
通過場所 및 節次	○ 通過地點은 板門店으로 함.	○ 군사분계선 통과절차는 赤十字 慣例에 따름.
滯留日程 協議	○ 방문 8일전에 滯留日程表 를 相對側에 修交하고 日程을 協議 決定	○ 방문 1주일전에 滯留日程 協議
宿 食	○ 訪問團은 같은 宿所에서 宿食하며 招請側에서 便宜 提供	○ 宿食을 包含한 一切의 便宜는 招請者側이 負擔

《 第2次 實務代表接觸 : 1985.7.19,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 訪問地 및 訪問團 規模 問題 관련, 故鄉訪問團의 직접 故鄉 訪問을 主張하고 故鄉訪問團이 직접 故鄉을 訪問할 수 있다면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人員 規模는 별 문제없이 妥結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立場 表明	○ 방문지 및 방문단 규모 문제 관 련, 우리측의 직접 故鄉訪問 主張 은 實務接觸에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시비하고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서울·平壤으로 국한시 켜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訪問團 規模에 대한 언급을 일체 회피

《 第3次 實務代表接觸：1985.8.2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에 관한 合意書』 (案) 제시	○ 『赤十字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과 관련한 合意書』 (案) 제시

< 合意事項 >

區 分	合 意 內 容
訪問團 名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기 便宜대로</li> <li>- 우리側：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li> <li>- 北側：赤十字藝術團 및 故鄉訪問團</li> </ul>
訪問團 規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長：各 赤十字社 責任者 (1명)</li> <li>○ 故鄉訪問團：各 50명</li> <li>○ 藝術公演團：各 50명</li> <li>○ 取材記者：各 30명</li> <li>○ 支援人員：各 20명</li> </ul> <p>(각기 총 151명)</p>

區 分	合 意 內 容
故鄉訪問團 構成	○ 서울과 平壤에 故鄉을 든 사람 위주로 構成
訪問 方式	○ 同時交換 訪問
訪問 時期	○ 1985. 9. 20-9. 23 (3박 4일)
訪問地	○ 서울과 平壤
相逢 範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直系尊卑屬은 헤어질 당시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li> <li>○ 親戚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傍系는 8촌</li> <li>- 처·외가는 4촌</li> </ul> </li> <li>○ 本人의 希望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親戚 包含</li> </ul>
藝術公演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演回數 : 각기 2회</li> <li>○ 公演內容 : 民族傳統歌舞 중심, 相對方 誹謗 禁止</li> <li>○ 事前措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프로그램은 3일전 상대측에 통보</li> <li>- 적십자인원 2명과 공연기술인원 3명이 9.10-12 상대측 共演場 事前踏査</li> </ul> </li> <li>○ 公演時間은 120분 정도</li> </ul>

區 分	合 意 內 容
身邊安全保障	○ 訪問 7일전 聲明發表, 文本 修交
輸 送	○ 招請側 車輛 利用
通 信	○ 서울-平壤間 1일 2회 行囊 運用 ○ 現 南北直通電話 20회선 이용
取 材	○ 離散家族 相逢 現場의 取材活動 保障
通過方法	○ 場所 : 板門店 ○ 節次 : 南北赤十字會談 慣例에 따름
訪問團 名單 通報	○ 故鄉訪問團 : 10일전 ○ 其他 人員 : 3일전
滯留 日程	○ 방문 7일전 日程 協議
身分 證明	○ 赤十字 徽章에 자기측 標識 附着 ○ 赤十字 總裁 發行의 身分證明書 ○ 記者는 記者 腕章 着用
其 他	○ 공연프로그램은 자기측이 製作, 携帶하여 配布 ○ 相對方의 案内와 秩序 尊重

### 3. 南北赤十字會談再開 및 第2次 訪問團 交換을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南北赤十字會談 再開 및 第2次 訪問團交換을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第1次 實務代表接觸 (1989. 9. 27,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第2次 實務代表接觸 (1989. 10. 6,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第3次 實務代表接觸 (1989. 10. 16,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第4次 實務代表接觸 (1989. 11. 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第5次 實務代表接觸 (1989. 11. 13,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第6次 實務代表接觸 (1989. 11. 21,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第7次 實務代表接觸 (1989. 11. 27,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首席代表 個別接觸 (1989. 12. 4,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首席代表 個別接觸 (1990. 11. 7,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第8次 實務代表接觸 (1990. 11. 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成立經緯 >

- 1989. 5. 31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書翰
-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赤十字 實務代表接觸 6. 16 개최 제의
- 1989. 7. 12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書翰
- 第11次 赤十字會談 開催問題 協議 위한 赤十字 實務代表接觸 8. 2 개최 제의
  - \* 제2차 방문단 교환문제는 제11차 적십자회담에서 제1차 방문단 교환시의 선례에 따라 토의
- 1989. 8. 26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書翰
-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開催 促求
  - 1989. 9. 6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대표 3명 파견
- 1989. 9. 5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書翰
- 第1次 實務代表接觸 開催日字 9. 27로 수정제의

《 第1次 實務代表接觸 : 1989. 9. 27,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개최문제를 비롯한 제2차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환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 회의를 非公開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며(결국 북측 주장을 수용), 會談外的 問題를 거론하지 말것을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과 有關한 提案』과 『北南赤十字 本會談 문제와 有關한 提案』을 제시</li> <li>○ 公開로 會議를 진행할 것을 계속 고집하였으며 『문익환·임수경』 등의 문제를 集中的으로 거론</li> </ul>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11次會談 開催日字	○ 日字 : 1989. 11. 1 (平壤)	○ 日字 : 1989. 12. 15 (平壤)
訪問團 規模	○ 團長 : 1명(적십자책임자) ○ 故訪團 : 300명 ○ 藝術團 : 50명 ○ 取材記者 : 100명 ○ 支援人員 : 50명 (총 501 명)	○ 團長: 1명(적십자부책임자) ○ 故訪團 : 300명 ○ 藝術團 : 300명 ○ 取材記者: 30명 ○ 隨行員 : 40명 (총 671 명)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訪問團 訪問時期	○ 1989.12. 8 - 12.13 (5박 6일)	○ 1989.11. 8 - 11.11 (3박 4일)
訪問團 構 成	○ 南과 北에 고향을 둔 離散家族	○ 서울·平壤에 故郷을 둔 當事者 위주
訪問地 및 公演地	○ 故訪問團 : 자기고향 직접 방문 (혈육상봉 및 성묘) ○ 藝術團 : 서울·평양	○ 故訪問團 : 서울·平壤  ○ 藝術團 : 서울·平壤
離散家族 相逢範圍	○ 尊·卑屬 : 헤어질 당시 의 家族과 그 이후 出生 家族 ○ 傍系 8寸, 처·외가 4寸 ○ 本人希望에 따라 확인 된 친척	○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들의 子女  ○ 방계 8촌, 처·외권 4촌 ○ 본인이 요구하는 親戚 포함 * 家庭的 雰圍氣에서 相逢할 수 있도록 便宜提供 및 個別相逢 시 인권 불침해
公演場所 및 回数	○ 場所 : 시설완비된 劇場 ○ 回数 : 2회	○ 場所 : 시설완비된 장소 ○ 回数 : 4회
公演內容 및 司會	○ 民族傳統歌舞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誹謗·中傷, 자극하지 않는 내용	○ 民族的인 것으로 하며 상대방을 誹謗·刺戟 삼가

區 分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司會者는 정치성 배제, 상대방을 誹謗·刺戟하지 않는 원칙하에 公演內容·種目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演內容·種目 紹介는 공연자측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되 상대방 誹謗·刺戟치 않는 원칙에서 함</li> </ul>
公演內容 中 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방송과 소리방송으로 實況中繼</li> </ul>
公演프로 그램 交換 및 事前踏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7일전 프로그램 상대측에 통보</li> <li>○ 공연준비사항 사전점검 위해 赤十字 人員 2명, 技術 人員 3명이 공연장 사전 답사(1989. 11. 28-11.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演場所 사전요해 위해 적십자 일군 2명, 전문 일군 3명의 先發隊 派遣 (1989. 10. 30-11. 1)</li> </ul>
公演時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분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시간</li> </ul>
身邊安全 保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답사반, 訪問團의 방문 7일전 身邊安全保障 聲明發表 및 그 문본 수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藝術團, 故訪團과 그 家族·親戚의 身邊安全을 위한 擔保聲明 發表 및 그 文本을 방문 7일 전 관문점 연락대표부를 통해 교환</li> </ul>
輸送·通信 및 行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교환방문시의 先例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行囊運搬은 매일 1-2회 정도 보장</li> <li>○ 通信保障을 위해 南北 直通電話 利用</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記 者 的 取 材 活 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측 기자들의 取材活動 보장 및 취재에 필요한 諸般 便宜提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由取材 위한 모든 便宜 保障</li> <li>* 記者들의 活動에서 상호 상대방 誹謗·中傷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li> <li>○ 기자완장 착용</li> </ul>
通 過 場 所 및 節 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교환방문시의 先例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通過地點은 板門店</li> <li>○ 通過節次는 1차 訪問團 交換時와 同一</li> </ul>
訪 問 者 名 單 通 報 時 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30일전 이산가족찾기 의뢰서를 상대측에 통보및 방문 20일전 回報書 상대측에 통보</li> <li>○ 상봉대상자가 확인된 離散 家族을 위주로 한 訪問者 명단은 15일전 통보</li> <li>○ 藝術團·記者·支援人員 명단은 방문 3일전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者의 희망대로 성의를 다해 연고자를 찾아주며 相逢할 수 있도록 조건 보장</li> <li>○ 故訪團 성원에 대한 자료는 출발 20일전 초청측에 넘겨줌</li> <li>○ 적십자단체 부책임자와 藝術團·隨員·記者名單은 방문 10일전 상대측에 넘겨줌</li> </ul>
滯 留 日 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7일전에 滯留日程 表를 상대측에 수교, 日程 協議·決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측 지역 滯留日程 協議는 방문 7일전에 함</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其他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측 지역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案内와 秩序에 따름.</li> <li>○ 宿食, 輸送, 通信 등의 편의는 초청측에서 제공</li> <li>○ 公演舞臺에서 事前演習 실시를 위한 便宜提供</li> <li>○ 舞臺裝置 補助人員 및 일반조명기구 등 공연관련 諸般問題는 초청측에서 편의제공</li> <li>○ 공연프로그램은 공연측이 製作・携帶하여 配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 宿食, 交通, 醫療奉仕 등의 便宜는 초청측이 책임지고 무료로 保障</li> <li>○ 공연개막전 공연자측의 舞臺演習을 위한 편의 제공</li> <li>○ 공연관련 舞臺裝置・기술기재・照明裝置 등은 공연자측에서 가져가거나 상대측 시설 이용</li> <li>○ 공연자측의 요청에 따라 技術人員 및 기타 人員의 努力的 방조 제공</li> <li>○ 공연안내장은 공연자측에서 準備, 觀覽者에게 배포</li> </ul>

《 第2次 實務代表接觸：1989.10. 6,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구체적인 『南北赤十字會談再開問題와 제2차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환문제에 관한 提案』을 내놓았음.</li> <li>○ 會談外的 問題에 대한 거론을 삼갈 것을 재차 要求하면서 이를 일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접촉시에 제기하였던 立場만을 완강히 고집하고 折衷意思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li> <li>○ 先 發言을 통해 『문익환·임수경·문규현』 司法處理 問題에 대해 集中舉論하면서 적십자사가 조속한 措置를 취할 것을 거듭 주장</li> </ul>

〈 雙方 提案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基本立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 本會談, 後 訪問團』 추진</li> <li>○ 故鄉訪問團 規模가 예술 공연단 규모보다 多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 訪問團, 後 本會談』 추진</li> <li>○ 藝術公演團과 故鄉訪問團의 규모는 同數</li> </ul>
訪問團 名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li> <li>* 각기  편리한대로 呼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訪問團 規 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長 : 1명(적십자책임자)</li> <li>○ 故訪團 : 300명</li> <li>○ 藝術團 : 50명</li> <li>○ 取材記者 : 100명</li> <li>○ 支援人員 : 50명</li> <li style="text-align: center;">(총 501 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長: 1명(적십자부책임자)</li> <li>○ 故訪團 : 300명</li> <li>○ 藝術團 : 300명</li> <li>○ 記者團 : 30명</li> <li>○ 隨員 : 40명</li> <li style="text-align: center;">(총 671명)</li> </ul>
訪問團 構 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과 北에 고향을 둔 이산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平壤에 고향을 둔 當事者 위주</li> </ul>
訪問團 交換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 交換訪問 方式</li> </ul>	

《 第3次 實務代表接觸 : 1989.10.16,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 交換日字 및 本會談 開催 日字에 대한 修正案을 제시 (북측안 수용)</li> <li>○ 더 이상 會談外的 問題에 대해 거론하지 말것을 促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 交換日字 및 本會談 開催 日字에 대한 修正案을 提示</li> <li>○ 첫 發言에서 『 문익환 · 임수경 問題 』를 계속 들고나왔음</li> </ul>

< 雙方 意見 差異点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訪問團 交換日字	○ 1989.12. 8	○ 1989.12. 8
11次會談 開催日字	○ 1989.12.19	○ 1989.12.15
訪問團 規模 (故訪團 · 藝術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訪團 : 300명</li> <li>○ 藝術團 : 50명</li> <li>* 離散家族 故訪團 사업취지에 따라 規模는 故訪團 위주, 藝術團은 부수적으로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訪團 : 300명</li> <li>○ 藝術團 : 300명</li> <li>* 故訪團과 藝術團은 동수 규모, 특히 예술단 규모는 각기 편리한 대로 (北側: 300명, 南側: 50명) 구성</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訪問地	○ 故訪團 : 자기고향 직접 訪問, 省墓	○ 示範事業으로 서울· 平壤 國한

<合意事項>

○ 訪問團 交換日字 및 11次會談 開催日字

- 訪問團 交換日字 : 1989.12. 8

- 11次會談 開催日字 : 1989.12.15

《 第4次 實務代表接觸 : 1989.11. 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개최 와 제2차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에 관한 合意書』를 제시</li> <li>* 쌍방간 방문단 規模問題, 藝術 公演 實況中繼 문제 등 주요 爭點事項에 대한 見解差異 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과 北南赤十字 本會談 再開 문제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li> <li>○ 『문익환·임수경』문제를 전혀 舉論하지 않았으며, 또한 막후 接觸을 통해 相互意見 差異를 妥結하자고 제의</li> </ul>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訪問團 規 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長 : 1명(적십자책임자)</li> <li>○ 故訪團 : 300명</li> <li>○ 藝術團 : 100명</li> <li>○ 取材記者: 30명</li> <li>○ 支援人員: 4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團長: 1명(적십자부책임자)</li> <li>○ 故訪團 : 300명</li> <li>○ 藝術團 : 50-300명 범위 안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北側藝術團 250 명으로 수정)</li> <li>○ 取材記者 : 30명</li> <li>○ 隨行員 : 40명</li> </ul>

〈合意事項〉

- 訪問地 : 서울·平壤

《 第5次 實務代表接觸：1989.11.13,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이 촉박한 점등을 고려하여 訪問團 規模問題, 藝術公演 實況 中繼 문제에 관해 거듭 折衷내지 讓步 可能性을 提示하면서 一括 妥結할 것을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 規模問題, 藝術公演 實況 中繼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거듭 되는 절충 내지 讓步 可能性 제시에 호응하지 않고 便宜主義的인 적용을 계속 주장</li> </ul>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訪問團 規模 (故訪團·藝術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訪團：300명</li> <li>○ 藝術團：1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訪團：300명</li> <li>○ 藝術團：200명</li> <li>* 총 571명 범위내에서 藝術團·故訪團 規模를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하자고 주장</li> </ul>

〈合意事項〉

- 藝術團公演 TV·라디오 實況中繼

《 第6次 實務代表接觸 : 1989.11.21,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측	北 측
<p>○ 訪問地問題·實況中繼問題·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북측 제의를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先例에 따라 하면 모든 문제가 完全妥結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合意書 文案調整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p>	<p>○ 우리측의 요구를 외면하고 藝術公演回數, 公演時間, 引率者級, 故訪團對象者, 公演內容 등에 대해 자기측 주장을 고집한채 妥協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p>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측	北 측
訪問團 規模	<p>○ 故訪團 : 350명 ○ 藝術團 : 150명</p>	<p>○ 故訪團 : 300명 ○ 藝術團 : 200명</p>
公演回數	3 회	4 회
公演時間	150분 정도	2 - 3 시간
引率者 (團長) 級	적십자 副責任者級 이상 人士	적십자 副責任者
故訪團 對象者	南과 北에 故鄉을 둔 離散家族	서울·平壤에 故鄉을 둔 당사자 위주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公演内容物	『꽃파는 처녀』등 革命歌劇은 排除	『꽃파는 처녀』, 『피바 다』 등 革命歌劇

<合意事項>

○ 訪問團 規模 (총 571명 범위내에서 故訪問團·藝術團 規模는 각기 편리 한대로 구성)

- 우리側 : 고방단 350명, 예술단 150명, 기자 30명, 지원인원 40명, 인솔자 1명 (총 571명)

- 北 側 : 고방단 300명, 예술단 200명, 기자 30명, 수행원 40명, 인솔자 1명 (총 571명)

○ 公演内容原則

- 民族的인 内容, 健全한 内容, 中傷·誹謗하지 않는 内容 등 공연 内容 『3個原則』

《 第7次 實務代表接觸 : 1989.11.27,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꽃파는 처녀』 또는 『피바다』 등 革命歌劇이 적십자원칙, 訪問團 交換趣旨, 南北關係 改善 등에 위배됨을 指摘하고 공연내용이 우리측을 刺戟하지 않는 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p>	<p>○ 적반하장격으로 責任轉嫁論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 公演內容 原則에서 『상대방을 刺戟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合意한 바 없다고 強辯하고, 또한 『꽃파는 처녀』의 공연을 되풀이 주장</p>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公演回數	3 회	4 회
公演時間	150분 정도	3시간
公演內容物	革命歌劇 排除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 革命歌劇
引率者 (團長) 級	적십자 副責任者級 이상 人士	적십자 副責任者
故訪團 對象者	南과 北에 故鄉을 둔 離散家族	서울·平壤에 고향을 둔 당사자 위주

※ 쌍방 首席代表間의 個別接觸日字를 직통전화를 통해 連絡하기로 하고 헤어짐으로써 사실상 次期接觸 日字를 확정짓지 못하였음.

《 首席代表 個別接觸：1989.12. 4,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第11次 赤十字會談 開催問題	쌍방이 合意한 날짜(12.15) 에 開催할 것을 主張	先 訪問團 交換, 後 本 會談 開催 主張
公 演 内容物	『革命歌劇』이 아닌 다른 内容物로  교체 주장	계속 協議할 문제라고 主張
接觸 繼續 問題	追後 直通電話로 連絡	제8차 實務代表接觸 提議 (1990.1.22)

※ 우리측이 次期 接觸과 관련 追後 直通電話를 통해 連絡할 것을 提議  
한데 대해 北側은 이에 同意

〈 意見一致 事項 〉

- 쌍방이 合意한 12월 8일에 訪問團交換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訪問團交換은 來年으로 延期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赤十字 人道主義 사업에서 혁명 가극을 公演하겠다는 것은 적십자의 中立性原則(정치성 배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藝術公演問題가 故訪團 實現에 걸림돌이 된다면 예술 공연문제는 南北文化藝術 交流事業으로 넘겨서 상호주의에 입각,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강조</li> <li>○ 또한 北側이 革命歌劇 公演을 변경할 경우, 訪問團 規模 調整 문제에 대한 肯定的인 檢討 用意를 시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피는 처녀』는 雙方이 合意한 公演內容에 관한 原則에 不합되고, 赤十字 原則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우리측의 北韓實相 公開와 民族大交流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을 受容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公演에 問題없다고 주장</li> </ul>

《 第8次 實務代表接觸 : 1990.11. 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이상 離散家族問題』, 『北 側의 革命歌劇公演 撤回問題』, 『赤十字 本會談 開催時期 問題』 등에 대해 북측의 態度變更 촉구</li> <li>○ 次期接觸과 관련하여 1990.11.12 -17 기간중 제9차 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革命歌劇公演』에 우리측의 동의를 要求하면서 從來의 立場을 고수</li> <li>○ 우리측이 革命歌劇 『꽃파는 처녀』 공연에 同意하지 않는한  접촉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次期接觸을 회피</li> </ul>

〈 雙方 意見 差異點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第11次 赤十字會談 開催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차 本會談을 91년 1월 중 平壤에서, 제12차 本會談을 제11차 本會談 開催 1개월후 서울에서 開催 제의</li> <li>* 故鄉訪問團 交換實現 여부에 關係없이 새로이 定할 것을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 訪問團交換, 後 本會談開催 주장</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公演內容物	○ 『革命歌劇』이 아닌 민족 가극이나 순수한 民族傳統 歌舞로 변경 촉구	○ 『꽃파는 처녀』 公演 계속 주장
故訪團과 藝術團의 分離問題	○ 藝術公演問題가 『故訪團』 교환실현의 장애가 된다면 이를 『故訪團』과 분리하여 南北文化藝術交流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	○ 藝術公演問題는 『故訪團』 교환사업과 함께 실시하기로 기 합의되었음을 주장
60세 이상 離散家族 問題	○ 60세 이상 離散家族 故鄉 訪問問題를 本會談이 타결 되기 이전에라도 우선 協議·解決할 것을 提議	○ 離散家族問題는 연령이나 계층별로 나눌 수 없으며 實務代表接觸의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

4.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訪問을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訪問을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0 第1次 實務代表接觸 (1992. 6. 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2次 實務代表接觸 (1992. 6.1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3次 實務代表接觸 (1992. 6.2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4次 實務代表接觸 (1992. 7. 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5次 實務代表接觸 (1992. 7.14,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6次 實務代表接觸 (1992. 7.2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7次 實務代表接觸 (1992. 7.2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0 第8次 實務代表接觸 (1992. 8. 7,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成立經緯 >

○ 1992. 5. 7 第7次 南北高位級會談時 合意文 共同發表

- 8.15 光復節을 계기로 각기 老父母 100명, 藝術人 70명, 記者·支援人員 70명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방문 단 및 예술단을 서울·평양에서 同時 交換토록 쌍방 赤十字 團體들에 委任

○ 1992. 5. 28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

-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提議  
1992. 6. 6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대표 2명 파견

○ 1992. 6. 1 姜英勳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

- 제1차 實務代表接觸 開催日字 6.5, 대표 3명으로 수정 제의

《 第1次 實務代表接觸：1992.6.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訪問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li> <li>○ 북측의 회담외적인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대신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事業은 제7차 高位級會談에서의 合意에 따라 겨레앞에 내놓은 첫 선물로서 결코 流産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前提條件 없이 꼭 실현되도록 雙方이 努力해야할 것임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과 관련한 合意書(草案)』을 제시</li> <li>○ 기본발언과는 별도의 추가발언을 통해 『核問題』, 『이인모送還問題』 등의 會談外的 問題를 學論하면서 赤十字 團體들이 이와 관련하여 해당한 措置를 취하거나 응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li> </ul>

〈 雙方 提案 比較 〉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訪問團 名稱	○ 南北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訪問團 規模	○ 引率責任者：1명 老父母訪問團：100명 藝術團：70명 取材記者：30명	○ 團長：적십자단체 부책임자급 1명 老父母訪問團：100명 藝術團：70명

區 分	우 리 側	北 側
	支援人員 : 40명 (총 241명)	記者 : 40명 保障成員 : 30명 (단장포함) (총 240명)
訪問團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父母訪問團은 50세이상의 家族을 중심으로 편의에 따라 선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父母訪問團 成員은 50세이상의 北과 南에 고향을 둔 사람</li> <li> </li> <li>*상대측 지역에서 人命被害, 強盜, 竊도 등의 犯罪를 저지른 자 제외</li> </ul>
訪問團 交換 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同時交換訪問</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同時交換方式</li> </ul>
訪問團 交換 時期 및 期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 8.18 - 8.21 (3박 4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 8.25 - 8.28 (3박 4일)</li> </ul>
訪問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 平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壤 · 서울</li> </ul>
離散家族 相逢範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 후 出生한 가족을 優先</li> <li>○ 親戚의 경우 傍系 8촌, 처·외가 4촌</li> <li>○ 본인의 希望에 따라 그밖의 親戚도 包含</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들의 子女</li> <li>○ 親戚의 경우 傍系 8촌, 처·외권 4촌</li> <li>○ 그밖에 本人이 要求하는 親戚</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公演場所 및 回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場所 : 施設이 완비된 公演場</li> <li>○ 回數 : 총 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場所 : 公演施設이 완비 된 場所</li> <li>○ 回數 : 4회</li> </ul>
公演內容 및 司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춤을 중심으로 상대 방을 刺戟하지 않는 내용</li> <li>○ 司會者는 公演種目만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와 춤으로 함</li> <li>○ 公演內容은 民族的이고 健全하며 상대측을 誹謗· 中傷하지 않는 것으로함.</li> <li>○ 공연시 紹介者는 상대측 을 誹謗하지 않는 원칙 에서 인사말과 함께 공 연종목 내용을 소개</li> </ul>
公演內容 中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측의 公演을 TV와 라디오로 實況中繼</li> </ul>	
公演프로그램 交換 및 事前 踏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演프로그램은 방문 3일 전 상대측에 通報</li> <li>○ 公演準備事項 事前點檢을 위해 적십자인원 2명· 技術人員 3명 公演場 事前 踏査 (1992.8.9 - 8.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演順序를 방문 5일전 상대측에 통보 * 일방이 意見を 제기할 경우 협의</li> <li>○ 公演場所와 시설을 사전 요해하기 위해 적십자 일꾼 2명, 전문일꾼 3명</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으로 된 先發隊를 상대 측에 파견 (1992.8.16 - 8.18)</p>
公演時間	○ 120분정도	○ 1시간 30분 - 2시간
身邊安全保障	○ 방문 7일전 身邊安全保障 覺書 상호교환	○ 관계당국의 안전담보 성명 발표 및 그 文本을 訪問團 交換 3일전 판문 점 連絡代表部를 통해 교환
輸送·通信및 行囊	<p>○ 輸送은 초청측 차량 이용</p> <p>○ 서울·平壤間 行囊은 1일 2회 운용</p> <p>○ 業務連絡 및 記事送稿를 위해 현재 架設되어 있는 南北直通電話 회선 이용 (필요시 雙方 合意로 증설)</p>	<p>○ 訪問團의 宿食, 交通, 醫療奉仕 등 모든 便宜 는 招請側이 무료로 보 장</p> <p>○ 行囊은 매일 1회 保障</p> <p>○ 通信은 현재 쌍방 적십 자단체사이에 架設되어 있는 직통전화 이용</p>
記者的 取材 活動	○ 老父母 相逢 및 藝術團 公演現場에 대한 取材活動 을 保障하고 取材에 필요 한 諸般便宜 提供	○ 隨行記者들의 取材 및 報道活動은 誹謗中傷을 금하고, 民族的 和解와 단합을 圖謀하는데 기여 하는 원칙으로 함.

區 分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藝術團과 故鄉訪問團 成員들의 活動에 대하여 자유롭게 取材할 수 있도록 모든 便宜保障</li> </ul>
<p>通過場所 및 節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通過地點은 板門店, 通過 節次는 慣例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의 軍事分界線 通過地點은 板門店, 通過 節次는 제1차 방문단 교환 때와 같이함</li> </ul>
<p>訪問者 名單 通報時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父母訪問團 名單과 藝術團·取材記者·支援人員중 離散家族名單은 방문 30일 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父母訪問團의 名單은 후보자를 추가하여 순위가 부여된 200명을 교환</li> </ul> </li> <li>○ 명단 접수측은 15일전까지 相逢可能 對象者 名單을 회보</li> <li>○ 최종확정 명단은 방문 7일 전 상대측에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 交換 30일전 100명의 老父母 名單 상대측에 통보</li> <li>○ 訪問團 交換 20일전 상대측 老父母訪問團 成員들의 家族, 親戚들을 찾아 정형을 상대측에 통보</li> <li>○ 訪問團 交換 19일전 1차로 名單을 交換한 노부모방문단 成원들가운데 家族, 親戚들을 찾을 수 없는 대상이 있을 경우 추가로 노부모 30명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li> <li>○ 追加名單에 대한 가족</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p>친척들을 찾은 정형을 방문단 교환 15일전 상대측에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交換 12일전 노부모방문단 最終名單을 상대측에 確定 通報</li> <li>○ 藝術團, 隨員, 記者들의 명단은 방문 5일전 판문점 連絡代表部를 통해 상대측에 통보 *名單에는 姓名, 性別, 訪問團 職位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li> </ul>
<p>訪問者 名單 樣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姓名, 性別, 年齡, 故鄉, 相逢對象者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첨부</li> <li>○ 상봉대상자란에는 상봉 대상자의 姓名, 性別, 年齡, 故鄉, 헤어진 때를 기재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父母訪問團 성원명단에는 姓名, 性別, 年齡, 出生地, 父母의 姓名, 갈라지기 직전의 職場 職位 및 住所를 밝히고 사진첨부</li> <li>○ 相逢對象에 대한 자료에는 姓名, 性別, 年齡, 出生地, 訪問者와의 관계, 헤어질 당시의 住所와 職業을 밝히며 그밖에 필요한 내용을 첨부</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訪問者 標識 및 證明書 所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父母訪問團, 藝術團, 支援人員은 赤十字 徽章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內容의 표지 부착</li> <li>○ 記者는 방문단 표지외에 기자완장을 착용, 기타사항은 南北赤十字會談의 관례 준용</li> <li>○ 訪問者는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증 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 成員들은 자기측 赤十字 中央機關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赤十字 徽章 부착</li> <li>○ 기자들은 그밖에 기자완장을 着用</li> </ul>
相逢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同相逢과 個別相逢 方式으로 함</li> <li>○ 相逢當事者는 訪問期間 동안 合宿 및 同行할 수 있음</li> <li>○ 相逢 當事者의 희망에 따라 서울·平壤 隣近地域에 한해 家庭訪問과 省墓를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相逢은 家族, 親戚單位로 제3자의 介入이 없이 가정적인 雰圍氣 속에서 하도록 함</li> </ul>

區 分	우 리 側	北 側
滯留日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실무대표 각 1명으로 訪問 10일전 協議</li> <li>○ 방문 7일전 滯留日程表 상호 교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滯留日程 協議는 방문 3일전에 함</li> </ul>
其他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측 지역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案内와 秩序에 따름</li> <li>○ 방문단 人員들에 대한 便宜는 招請側이 提供</li> <li>○ 公演舞臺에서 事前演習 便宜 提供</li> <li>○ 舞臺裝置 補助人員 및 一般照明器具 提供 등 공연 관련 문제는 초청측이 便宜 提供</li> <li>○ 공연프로그램은 공연측이 公演場所에서 配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기간중 상대측의 案内와 秩序에 따름</li> <li>○ 公演에 필요한 舞臺裝置·技術器材·照明裝置등은 공연자측에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상대측 시설을 利用할 수도 있음</li> <li>○ 招請側은 公演者側의 要請에 따라 技術人員과 其他人員들의 努力的 방조를 提供</li> <li>○ 藝術公演에 대한 포스터·公演順序는 公演者側이 준비해 가지고 가서 시내에 붙이고 관람자들에게 配布</li> </ul>

《 第2次 實務代表接觸 : 1992.6.1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老父母訪問團 交換問題</p> <p>- 쌍방 合意書案을 중심으로 實務節次問題를 討議, 相互 차이 점을 좁혀갈 것을 提議</p> <p>○ 核問題 · 이인모問題</p> <p>- 南北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교환에 따른 實務節次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자리이지 어느 특정개인의 送還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일축</p>	<p>○ 老父母訪問團 交換問題</p> <p>- 訪問團規模, 訪問時期, 相逢方法, 訪問團 名單 交換 및 回報, 老父母訪問團 이외의 藝術團 · 記者 · 支援人員 등 構成員에 대한 相逢周旋 문제만 妥結되면 된다는 입장 표시</p> <p>○ 核問題 · 이인모問題</p> <p>- 核問題와 관련한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訪問團 交換事業 앞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p> <p>- 이인모問題는 쌍방 赤十字 團體가 우선 관심을 두고 解決해야 할 가장 절박한 人道主義 問題라고 강조</p> <p>* 具體的 送還節次 協議를 제의</p>

< 合意事項 >

0 訪問團 引率責任者

- 우리側 : 쌍방 적십자사 부총재 (부위원장)
- 北 側 : 쌍방 적십자사 부위원장 『금』

0 訪問團·事前踏查班 交換時期 및 期間

- 事前踏查班 : 1992. 8.16 - 8.18 (2박 3일)
- 訪問團 : 1992. 8.25 - 8.28 (3박 4일)

0 公演內容 原則 : 便宜대로 表記

- 우리側 : 『刺戟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 北 側 : 『誹謗·中傷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0 藝術團 公演은 TV·라디오로 實況中繼

《 第3次 實務代表接觸：1992.6.22,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合意한 노부모방문단 交換時期를 감안, 실무절차문제 의 早速한 妥結을 促求하고 合意書 修正案 제시</li> <li>- 藝術團·記者·支援人員 중 離散 家族의 相逢周旋問題, 상봉시 家庭訪問·省墓 등 허용문제, 老訪團  구성을 위한 사전명단교환시 人員數 問題 등을 재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團 交換에 따른 실무절차문제 에 대해서는 형식적 언급에 그친채 核査察問題와 相關한 우리측 입장을 集中學論 하는가 하면 討議過程에서도 核問題 言及에 이어 이인모 송환절차 協議問題를 제기하는 등 會談外的 問題의 學論과 이의 論爭으로 일관</li> </ul>

《 第4次 實務代表接觸 : 1992.7. 8,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南北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예술단 交換事業은 결코 다른 문제와 連繫될 수 없으며, 合意된 날짜에 무조건 實現되어야 함을 재강조하고, 쌍방 견해차이가 있는 事項부터 協議하여 타결한뒤 바로 合意書 文案整理에 들어갈 것을 提議</p> <p>* 우리측의 거듭된 促求에 따라 쌍방은 形式的이나마 실무절차 문제 討議 進行</p>	<p>○ 소위 『核騷動』 문제와 『이인모 送還』 문제를 集中學論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분명한 立場 表明을 요구하면서, 實務節次 討議의 전제 조건으로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교환사업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北赤 중앙위원회의 4개 『決定事項』을 제시</p> <p>① 남측이 앞으로도 核問題로 南北 合意書 履行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反北騷動을 벌인다면 방문단 실무절차 合意與否에 관계 없이 訪問團 事業이 流産될 수 있음</p> <p>② 이인모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방문단 교환전에 送還되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訪問團事業이 流産될 수 있음</p> <p>③ 상기 원칙적 立場을 南側 當局과 赤十字社에 정확히 전달하기 바람</p> <p>④ 앞으로도 南側 當局의 態度를 주시하겠음</p>

《 第5次 實務代表接觸 : 1992. 7. 14,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더이상 『核問題』와 『이인모 문제』등 회담외적문제를 제기 하여 실무절차문제 타결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에 따른 實務節次問題 討議에만 집중할 것을 촉구 하면서, 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남북간의 주요 異見事項에 대한 우리측 修正案을 提示</p> <p>- 우리측안중 藝術團·記者·支援人員 중 이산가족이 있을 경우 相逢을 주선하는 문제, 노부모 訪問團의 相逢方法에 있어서 상봉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家庭訪問과 省墓를 許容하는 문제는 북한측에 讓步</p> <p>- 북한측안 중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구성시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強盜, 절도 등 犯罪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 記者들의 取材活動에 대해 『비방중상 禁止와 民族的 和解와 團합을 圖謀하는 原則』을 설정하는 문제, 藝術團의 공연포스터를 시내에 부착하는 문제 등을 撤回할 것을 중용</p>	<p>○ 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첫 발언에서 原則的 立場만을 언급했을 뿐 討議過程에서는 『核問題』와 『이인모問題』를 집중거론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소위 『赤十字會 中央委員會 決定事項』을 거듭 주장한 후 형식적이거나 實務節次問題 討議에 呼應</p>

《 第6次 實務代表接觸 : 1992.7.20,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절차문제의 妥結이 더이상 遲延되어서는 안될 시점에 와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南北離散 家族 老父母訪問團 및 藝術團의 교환은 아무런 前提條件 없이 合意된 날짜에 반드시 實現되어야 함을 강조</li> <li>○ 『核問題』나 『이인모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立場을 명백히 밝혔으며, 『포커스렌즈 訓練』은 年例的인 訓練으로 방문단 교환 문제와는 無關한 만큼 더 이상 擧論하지 말 것을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問題』와 『이인모 送還問題』를 방문단교환의 전제조건으로 견지하는 외에 『포커스렌즈 訓練』('92.8.19-30) 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와 이를 訪問團交換과 連繫시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단 실무절차 문제 討議에 들어가 修正案을 提示하였으나 의도적으로 妥結을 留保시키려는 態度 表明</li> <li>○ 『訪問者 사전 명단교환 인원수를 130명으로 하는 조건에서 방문단 총규모를 241명으로 하고, 藝術團의 公演回數를 2회, 行囊運用을 1일 2회로 한다』, 『老父母訪問團에 "상대측 지역에서 人命被害·強盜·절도 등 犯罪行爲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 기자의 취재 원칙 설정문제, 공연포스터 市内 부착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의 修正案 제시</li> </ul>

《 第7次 實務代表接觸 : 1992.7.2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核問題』, 『이인모問題』, 『포커스렌즈 訓練』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立場을 표명하고, 實務節次問題에 대해서는 제7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의 양해각서와 85년도 故鄉訪問團 交換時의 先例에 따라 할 것을 촉구</p> <p>- 『核問題』는 북측의 주장대로 IAEA의 사찰결과 平和的인 核政策이 입증된 것이 사실이라면 南北相互查察을 受容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p> <p>- 『이인모問題』는 이미 우리측 國務總理가 對北書翰을 통해 人道主義·相互主義 原則에 따른 解決方案을 제시한 만큼 北側이 이에 응하면 될 것임.</p> <p>- 『포커스렌즈 訓練』은 연례적 圖上訓練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음.</p>	<p>○ 실무절차문제 토의는 아예 외면한 채 『核問題』, 『이인모問題』, 『포커스렌즈訓練 問題』를 반복하여 거론하면서, 이들 3가지 문제가 訪問團交換의 『前提條件』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이같은 立場을 우리측 當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p> <p>- 특히 방문단 교환일정과 관련하여 『文化放送』의 『10월연기 不可避』 報道內容을 문제삼아 거론하면서 우리측으로부터 訪問團交換 延期提議를 誘導해내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였음</p>

《 第8次 實務代表接觸 : 1992.8. 7,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우 리 側	北 側
<p>○ 부당한 前提條件을 더이상 고집 하지 말고 實務接觸 代表로서의 본연의 任務에 충실하여 실무절차문제를 妥結시키는데 늦게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北側이 固守하고 있는 『老父母 訪問團에서 소위 범죄자 제외 문제』, 『記者의 取材活動原則 設定問題』, 『公演포스터의 市内 附着問題』 등의 不當性を 指摘</p>	<p>○ 『核問題』, 『이인모問題』 및 『포커스렌즈訓練 問題』를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거론하면서 실무절차문제 討議를 거부하는 한편 訪問團 交換의 霧散責任을 우리측에 轉嫁시키는데 시종일관 주력</p>

※ 北側이 제9차 接觸日字를 이미 쌍방이 合意한 訪問團 交換實施 期間 중(8.25 - 28)으로 提議한 데 대해 우리측은 北側이 訪問團 交換의 前提條件을 撤回할 때 直通電話를 통해 연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次期 接觸 日字에 合意를 못본채 接觸 終了